

일부 도시가스사업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 만연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 산업자원부에 도시가스시설 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방지 건의

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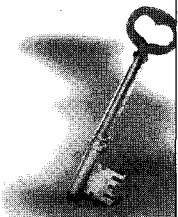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도급 받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업체에게 법령에도 없는 기술검토서를 사전 제출토록 하여 검토를 받도록 월권행위를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도시가스시설공사시에는 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신고, 시공감리, 완성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시공자에게 법령으로 규정된 서류 이외의 임의과다 서류제출을 강요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인력소요 및 공기지연 등 시공원가 상승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도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관련규정에도 없는 가스시설 점검을 빙자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므로써 시공지연, 가스공급지연 등으로 가스시공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근절되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시공자의 자체검사 등)에 의하여 자체검사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토록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1998년 12월 10일부로 개정하여 공사의 시공감리대상 및 완성검사 대상은 시공자가 반드시 참여(입회)없이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복점검을 받는 부담을 개선하였으며, 1999년 7월 1일부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를 시공자 스스로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령을 폐지하였다.



도시가스 신규 기술검토 개선 · 시행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건의한 도시가스 신규기술 검토를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하고, 이에 따른 완성검사를 FAX 신청 및 수수료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 620-30862호)고 밝혔다.

그러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기술검토 업무는 지역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사전 업무 협의 · 지시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메일) 신청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산의 한계 등(전산용량의 한정)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 점검의 날 행사, 가스사고 감소 추세 가스안전공, 시행 1년맞아 사고감소에 기여

'11월 가스안전 점검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이 제도 시행이후 가스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3년 하반기에 들어 고의가스사고와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분기별 1회 실시해오던 '사용자 자율점검의 날'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개칭하고 매월 4일 정기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등 2003년 11월부터 이를 새롭게 추진한바 있다.

지난 1년간 가스안전 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총 752회 행사가 지자체 및 가스공급자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등 가스시설 점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국의 7만1630여개소의 각 사업자 대표, 안전관리자에게 행사 안내문자를 전송했고, 행사안내 포스터 1만2000부를 인쇄해 배포하는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가스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집중가스사고 발생유형인 6대사고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20%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11월 행사에서는 불량LP가스시설 조기개선을 위해 전 임원이 참석해 현장 점검 및 시설개선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정된 '안전관리현장'을 제작해 전국 지역본부 · 지사에 배포, 게시토록 했다.

특히 11월은 동절기가 진입하는 시점임을 감안, 가급적 많은 가스업체 및 유관기관이 자체계획을 세워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각 사업자 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등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형식적 행사가 아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